##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9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조해진·추경호·김은혜

서일준 • 김정재 • 박성민

조수진 · 정운천 · 박대수

이양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금액이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행정력 부족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로 한정되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제237조제5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 제237조(통관의 보류)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                   |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u>.</u>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
|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   |
|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     | 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   |
| <u>하는 경우</u>       | 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
|                    | <u>수입하는 경우</u>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